

#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안

(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재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김기덕, 김수규,  
김정태, 김제리, 김종무,  
김평남, 김혜련, 문장길,  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 
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  
송아량, 양민규, 이광호,  
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 
임종국, 전석기, 정진술,  
최 선, 최정순, 한기영,  
황규복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,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,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함(안 제 5조).

다.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,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제위기”란 서울특별시 내 생산,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.
2. “경제위기대응시스템”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·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·물적 체계를 말한다.
3. “조기경보지수”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·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.
4. “모니터링”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·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·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경제위기의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각종 정책 수립·시행에 적용한다.

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.

1.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
2.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
3.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
4.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
5. 그 밖에 경제상황의 조기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
2. 경제 관련 지역 통계의 생산·수집 관리
3. 경제상황의 정기적인 분석·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
4.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5.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
6.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지원

7.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경제위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 ① 시장은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(이하 “대응매뉴얼”이라 한다)을 작성·배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·정비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경제위기 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대응매뉴얼의 작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

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.

1.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
2.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 및 대응
3.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개선
4.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, 자치구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
5. 그 밖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
2. 서울특별시 경제 관련 실·본부·국장
3. 서울특별시 내 경제 관련 기관·단체 및 기업의 대표 등 지역경제에

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② 협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

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,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제12조(실무지원단) ① 위원회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·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.

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20100000006

## 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재형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여차민 팀장  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2.01

회신일 : 2021.02.01

내용문의 : 02-2180-7943

###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제5조(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, 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, 제7조제3항 및 제4항(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), 제9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구성 등), 제12조(실무지원단)에 따라 비용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= 2,453,000천원(연평균 490,6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90,600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제6조의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 및 제7조제3항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 의뢰는 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에서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
- 제7조제4항의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규모,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용산정이 어려우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
- 제9조에 따른 경제상황점검위원회는 30명(시장 1명, 행정1부시장 1명, 경제 관련 실·본부·국장 1명, 시의원 5명, 민간위원 22명)으로 구성하고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제12조의 실무지원단은 소관 부서 공무원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소속 인력으로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
- 물가 및 인건비 인상률은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 = 2,453,000천원(연평균 490,6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	계
		2021	2022	2023	2024	2025		
세입	-	-	-	-	-	-	-	
	소계(a)	-	-	-	-	-	-	
세출	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(제5조)	480,000	480,000	480,000	480,000	480,000	2,400,000	
	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(제9조)	10,600	10,600	10,600	10,600	10,600	53,000	
	소계(b)	490,600	490,600	490,600	490,600	490,600	2,453,000	
□ 총 비용(b-a)		490,600	490,600	490,600	490,600	490,600	2,453,000	

-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: 연간 비용 480,000천원×5년=2,400,000천원
  - ※ 연간 비용 : 2021년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(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) 운영 위탁사업비 예산 480,000천원을 적용하여 추계
  - \* 별첨 : [참고자료] 2021년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예산 사업설명서
- 위원회 운영비용 : 참석수당 44,000천원+업무추진경비 9,000천원=53,000천원
  - 참석수당 : 수당단가 200천원×22명×연 2회×5년=44,000천원
    - ※ 참석수당 단가 : 「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    - ※ 지급인원 : 위원 30명 중 민간위원 22명만 지급
  - 업무추진경비 : 경비단가 30천원×30명×연 2회×5년=9,000천원
    - 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당관            조도형  
 조사분석팀장    여차민  
 예산분석관       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